

병력(病歷) 신고서(적성검사 신청자가 기재)

(1) 귀하는 정신분열증·정동장애·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

있음 없음

정신병적 상태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

병명 : 치료개시일: 치료종료일: 치료병원 :

(2) 귀하는 경련성질환(간질)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

있음 없음

병명 : 치료개시일: 치료종료일: 치료병원 :

(3) 귀하는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·알콜중독으로 치료받은 사실

있음 없음

이 있습니까?

병명 : 치료개시일: 치료종료일: 치료병원 :

19 년 월 일

신 고 인 성 명 (서명또는인)

※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.

판정관 의견

적 정 정 밀 검 사 필 요

판 정 관 성 명

인

영수필증붙이는곳

1.	2.	3.	4.	5.
6.	7.	8.	9.	10.

주 의 사 항

1. 학과시험은 10분전, 기능시험은 30분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합니다.
2. 시험장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, 여권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(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.) 및 컴퓨터 싸인펜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.
3. 신체검사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된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
4. 응시표는 최초의 접수일로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5. 불합격되었을 때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증을 새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6. 필기 또는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그 시험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.
7. 응시원서와 응시표의 신청내용 및 소지 면허종류 해당란에는 ○표를 하십시오.
8. 최종합격자는 응시표 뒷면에 영수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9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할 수 없습니다.
10.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과 면허 취소후 재응시자는 결격기간(6개월 또는 5년)을 확인하기 바라며, 결격기간 중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.
11. 시험에 합격되었어도 면허증을 받기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취급합니다.